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험금 지급 전쟁면책규정 예외 추가〉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53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선회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4. 23.
3. 회 부 일 : 2025. 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사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업계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와 우리 공군의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피해에 대해 ‘전쟁 면책’ 적용을 검토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이후 정부의 개입과 국회(백선회의원실)의 중재로 뒤늦게 보험업계가 해당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법령 해석에 관한 혼선이 여전하므로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사고 유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위해행

위로 인한 보험사고를 ‘전쟁 면책’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660조 단서 및 제1호·제2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개정안은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통합방위법」 제2조1)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위해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이른바 “전쟁위험 면책(제660조)”을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군사훈련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은 자들의 보험금청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안 제660조 단서 및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第660條(戰爭危險 等으로 因한 免責) 保險事故가 戰爭 其他의 變亂으로 因하여 생긴 때에는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으면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 없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第660條(戰爭危險 等으로 因한 免責) ----- ----- ----- ----- ----- . 다만, 보험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군사훈련</u> 2. <u>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토에 대한 적(敵)의 위해행위로서</u>

현행	개정안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

□ 이 법 제660조에 따른 “전쟁위험 면책”이란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임.

○ 이와 같은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전쟁·소요와 같은 사태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그 손해 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보험자가 적정하게 위험을 인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태 하의 사고 발생시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²⁾

- 1)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8682 판결 [보험금]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 다만, 위 면책규정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임의규정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추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쟁, 소요 등에 대한 담보특약을 통하여 보험인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나. 구체적 검토

□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위해행위에 대해 보험사의 전쟁위험 면책 주장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해당 면책규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입법 목적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개정안에서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군사훈련”의 경우 그 종류와 범위³⁾가 다양하므로, 보다 명확한 규율을 위하여 위임입법 마련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사태 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타당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발생시에는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있는바 (이하 생략)”

- 3) 군사훈련은 동 개정안의 제안 배경이 된 무기를 사용한 방어적 훈련 이외에도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도 포함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둘째, “전쟁위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660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점을⁴⁾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55

4)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8682 판결 [보험금] “본래 보험제도 자체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우연적, 돌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고발생의 예측곤란과 피해극대화를 이유로 한 면책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열거된 면책사유 중 소요는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